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95
----------	-------

제출년월일 : 2003. 12. 2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정수업무에 관한규정”이 개정됨으로써
-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등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도입·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주요골자

[과태료의 징수]

- 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조).
- 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구술 및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안 제4조).
- 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 절차 마련(안 제6조).

[신고포상금 지급]

- 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안 제8조).
- 마.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규정 마련(안 제10조).
- 사. 위법행위 신고자의 신고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12조).
- 아.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절차 등을 규정(안 제15조).
- 자.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파주시자원의질약과제환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자원의질약과제환용촉진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자원의질약과제환용촉진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질약과제환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 및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환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환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환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환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
3. 자원재환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환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2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 (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①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의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이하 “위반사업장”이라 한다)에 한하며,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10조 (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천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1조 (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2조 (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접수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신고서의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업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사실확인요청서(이하 “사실확인요청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자는 제9호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시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담당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확인서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8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신고서에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 (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별표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을 삭제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8541
입안자	환경보호과장	백 철 현
	재활용담당	박 찬 규
	담당자	이 명 수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1항)	300	300	300	-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실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과 대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임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아후)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법 제14조)	200	300	300	-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300	300	300	-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돌려주지 아 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
8.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 2항)	50	70	100	-
9.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100	100	100	-
1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재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 번 호	
	⑤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과 주 시 장 귀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파 주 시 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이의 제기자	③ 주 소			
과 태 료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처분내역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 번호	②고지 서번호	③과태료처 분통지일	④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 제기일	⑫법원 통보일

※ 서식은 A4형으로 작성할 것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은행명 :

⑥ 계좌번호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연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

— 전 취 선 —

신 고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같이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확인서

(신고내용)

- ① 인 제 : 년 월 일 시 분
- ② 어 디 서 : 시 읍·면·동 번지
- ③ 위반종별 :
- ④ 상황설명 :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파 주 시 장 귀하

감액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정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정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파 주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시(감정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원	~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과 주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정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원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정대상자용)

발행번호	재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파 주 시 장 귀 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파 주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파 주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부)

(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파 주 시 장 귀 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으로써,
-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등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도입·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과태료의 징수】

- 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조)
- 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구술 및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안 제4조)
- 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 절차 마련(안 제6조)

【신고포상금 지급】

- 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12조)
- 마.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규정 마련(안 제10조)
- 바. 위법행위 신고자의 신고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12조)
- 사.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절차 등을 규정(안 제15조)
- 아.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 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 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한 내용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동 조례에 포함하였음.

- 동 조례의 개정 배경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자기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음식점, 백화점 등의 업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나 무상배포금지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며

○ 대부분 지자체가 단속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이용고객의 신고를 통한 사업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자의 준법의식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안 제3조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과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따른 구술 및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 제기 및 법원통보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한하도록 하고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접객업소와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소규모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소규모인 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에서는 위법행위 신고자의 신고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지급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16조에서는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의 제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기본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주민참여를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여짐.
- 그러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이 지난 2003. 6. 18일 개정되었고 동년 6. 27일부터 시행 중인 사항으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신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했음에도 지연되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오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시책임에도 동 조례 개정 지연으로 부칙에서 동 조례의 시행을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과 1회 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 시행 등 정부의 새로운 시책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시행 전에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